

제품개발을 위한 기준 · 규격의 개선 방안

김 한 수
롯데 중앙 연구소

食品 위생법 제 7조(기준과 규격)

第 7條(基準과 規格) ①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은 國民保健上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販賣를 目的으로 하는 食品 또는 食品添加物의 製造 · 加工 · 사용 · 調理 및 보존의 방법에 관한 基準과 그 食品 또는 食品添加物의 成分에 관한 規格을 정하여 告示한다.

[改正 95.12.29, 99.5.24]

②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은 第 1項의 規格에 의하여 기준과 規格이 告示되지 아니한 食品 또는 食品添加物(化學的 合成品인 添加物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製造 · 加工 · 사용 · 調理 및 보존의 방법에 관한 기준과 그 成分에 관한 規格을 제출하게 하여 第 18條의 規格에 의하여 지정된 食品衛生檢查機關의 檢討를 거쳐 당해 食品 또는 食品添加物의 기준과 規格을 한시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改正 95.12.29, 98.2.28]

③ 輸出을 目的으로 하는 食品 또는 食品添加物의 基準과 規格은 第 1項 및 第 2項의 規格에 불구하고 輸入者가 요구하는 基準과 規格에 의할 수 있다. [改正 95.12.29]

④ 第 1項 및 第 2項의 規定에 의하여 基準과 規格이 정하여진 食品 또는 食品添加物은 그 基準에 의하여 製造 · 加工 · 사용 · 調理 또는 보존하여야 하며, 그 基準과 規格에 맞지 아니하는 食品 또는 食品添加物은 販賣의 目的으로 製造 · 輸入 · 加工 · 사용 · 調理 · 貯藏 · 運搬 · 보존 또는 陳列하지 못한다. [改正 95.12.29]

식품등의 공전(公典)

第 12條(食品 등의 公典)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은 第 7條 第 1項의 規定에 의하여 정하여진 食品 · 食品添加物의 基準 · 規格, 第 9條 第 1項의 規定에 의하여 정하여진 器具 및 容器 · 포장의 基準 · 規格과 第 10條 第 1項의 規定에 의하여 정하여진 食品등의 表示基準을 收錄한 食品등의 公典을 作成 · 普及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99.5.24]

食品 公典	食品첨가물 공전
2000 식품의약품안전청	2000 식품의약품안전청

신제품개발과 식품등의 기준 규격 과의 관계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 2000-18호

식품의기준및규격증개정고시

식품위생법 제 7조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0. 4. 18.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증 개정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붙임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개정

부 칙

이 고시는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개정

개정사유

안전성 위주의 관리체계로 안전한 식품을 국민에게 공급하고 규제성 기준 및 규격의 완화를 통하여 식품산업업체의 신제품개발 의욕을 고취하며 수입식품에 대한 불필요한 통상 마찰 요인의 해소와 국내식품의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하고자 함.

산업체의 신제품 개발범위 : 식품등의 기준 규격 한도内에서만 가능.

선진국에 비해 많은 제약을 받게 되고 한계를 갖고 있고 여기에 더불어 선진국에 비해 업계의 저조한 연구개발투자비(선진국 : 매출액의 3 ~ 10% 수준에 비해 국내 식품업계들의 연구 개발비 투자는 이의 1/10수준에도 미치기 어려운 수준으로 추정됨) → 신제품 개발력 저하要因으로 작용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춘 신제품 개발 어렵다.

식품첨가물 공전

신규 식품첨가물 지정 使用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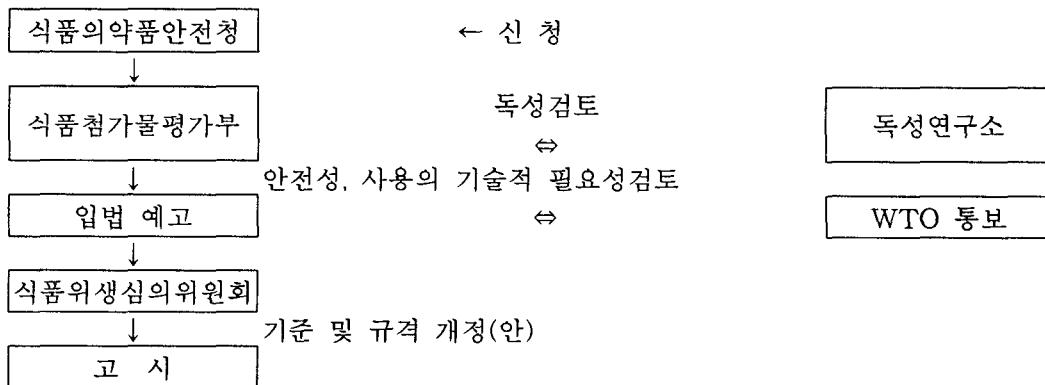
선진국(예로 미국, 일본, 유럽 공동체 등)에서 모두 식품첨가물로 사용이 허용된 첨가물은 한국에서 첨가물 지정신청 절차를 대폭 축소 조정하여 실행하거나 나아가서는 정부가 직접 첨가물 공전에 등재하는 positive system도입 필요.

현재의 첨가물 신규지정 절차 :

어렵고 장시간 소요 :

선진국에서 이미 제품에 사용中 → 한국에서는 제품개발不可 → 경쟁력 저하要因

식품첨가물 기준 규격 제정 절차 안내도



식품첨가물의 기준 규격제정 신청시 첨부자료

자료의 종류	신청
1) 자료 개요	○
2) 기원 또는 발견의 경위 및 외국에서의 사용현황에 관한 자료	
(1) 기원 또는 발견의 경위	○
(2) 외국에서의 사용현황	○
3) 제조 방법	○
4) 용도, 용법, 사용량	○
5) 기준 및 규격안	
가) 성분 규격	○
① 명칭	○
② 구조식 또는 시성식	○
③ 분자식 또는 분자량	○
④ 함량	○
⑤ 성상	○
⑥ 확인시험	○
⑦ 순도시험	○
⑧ 건조감량, 강열잔류물, 수분, 대장균 등	○
⑨ 정량법	○
⑩ 식품중의 식품첨가물의 분석법	○
나) 사용 기준	○
다) 보존 기준	○
6) 사용의 기술적 필요성에 관한 자료	
가) 사용의 필요성 및 기타의 동종의 첨가물과의 효과의 비교	○
나) 식품중에서 안정성	○
다) 식품중에서의 영양성분에 미치는 영향	△
7) 독성에 관한 자료	
① 반복투여독성시험	○
② 생식·발생독성시험	○
③ 유전독성시험	○
④ 면역독성시험	○
⑤ 발암성시험	○
⑥ 알반약리시험	○
8) 체내동태에 관한 자료	△

(주) ○는 첨부해야 할 자료. △는 필요한 경우 첨부해야 할 자료

식품 등의 표시기준

●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 2000-36호

식품위생법 제 10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표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0년 7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등의표시기준중개정

□ 목 적 : 식품등의 표시기준 중 일부 규제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보완하고, 민원이 자주 야기 되고 있는 규정을 개선하여 국제표시기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제 4조(표시사항) 식품등의 표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제품명(기구 또는 용기 포장은 제외한다)
2. 식품의 유형(따로 정하는 제품에 한한다)
3. <삭 제 99. 2. 18>
4. 업소명 및 소재지
5. 제조년월일(따로 정하는 제품에 한한다)
6. 유통기한(식품첨가물과 기구 또는 용기 · 포장은 제외한다)
7. 내용량(기구 또는 용기 · 포장은 제외한다)
8. 원재료명(기구 또는 용기 · 포장은 재질로 표시한다) 및 함량(원래료로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9. 성분명 및 함량(성분표시를 하고자 하는 식품 및 성분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10. 영양성분(따로 정하는 제품에 한한다)
11. 기타 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일본의 표시사항

유용성 표시件

국민소득 향상과 이에따른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인해 가공 식품에 대한 기본개념이 달라지고 있는 상황을 맞고 있다.

단순한 영양성분섭취 내지 기호 식품의 범주를 벗어나 건강을 위한 성분이 함유된 제품이라야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현재를 맞고있다고 본다.

다른 말로는 기능성식품, 다이어트식품, 건강보조식품, 특수영양식품, 건강증진식품 등의 용어를 쉽게 접하게 된다.

이러한 용어들을 뜻하는 기능을 갖는 각종 식품원료 등을 가공식품에 사용하는 경우가 다 반사회 되게 되었다. (예 : 식이섬유, 키토산, 매실, 로얄제리, 프로폴리스, EPA, DHA, 스쿠알렌, 엽록소, 베타카로틴, 알로에, 폴리페놀류, 각종 허브류 등...) 어떻게 보면 식품과 의약 품의 한계 범위가 불분명해지는것같은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느낌을 갖곤한다.

현행 우리나라 식품의 유용성표시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별표 3]에 의하여 건강보조식품, 특수영양식품, 인삼제품류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인정하고있고 그나마 표시내용의 포괄성 및 제한성으로 실효성이 적다.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 건강과 관련된 적절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도록 유도해야하고, 관, 학, 산, 소비자단체합동으로 유용성 표시연구를 활성화 시키는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일본은 우리보다는 진일보된 유용성 표시제도를 도입운용하고 있다.

특정보건용식품제도를 도입 관리하고있고 세계에서 기능성 식품들이 가장 활발히 개발, 생산, 판매되고 있다. 우리도 우리에게 적합한 유용성 성분표시제도를 신속히 확대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이로인한 한국형 기능성식품의 활성화와 식품소재산업 발전을 가져와 우리 식품산업이 세계로 도약하는 발판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별표 3] <개정 95.8.31, 96.12.20, 98.10.19, 2000.8.8>

허위표시 · 과대광고로보지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와 그적용대상식품(제6조 제2항관련)

1. 적용대상식품

건강보조식품, 특수영양식품 및 인삼제품류

2. 표시 및 광고

표시는 식품의 용기 · 포장에 기재하는 문자, 숫자 또는 도형을 말하고 광고는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잡지, 영상, 제품판매와 관련한 제품설명서와 특정회원용 제품설명서 등 인쇄물을 통한 제품선전 및 소개를 말한다.

가. 유용성

(1) 신체조직 기능의 일반적인 증진을 주목적으로 하는 표현. 다만,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사항을 표현할 수 없다. (예시 : 건강유지, 건강증진, 체질개선, 식이요법, 영양 보급 등의 표현은 가능하나 당뇨병, 변비 등 질병예방과 치료라는 표현 등은 할 수 없다.)

(2)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의 표현(예시 : 임신수유기영양보급, 병후회복시 영양보급, 노약자영양보급, 환자에 대한 영양보조 등)

(3) 제품에 함유된 주요성분의 신체조직 기능에 대한 식품영양학적 · 생리학적 기능 및 작용의 표현(예시 : 비타민, 칼슘, 철, 아미노산, 지방산 등의 기능 및 작용)

나. 용도

(1) 제품의 제조목적이나 주요 용도에 따라 용도의 표현(예시 : 유아식, 환자식 등)

(2) 특정질병을 치료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권장 내용의 표현(예시 : 발육기, 성장기, 임신수유기, 생년기, 노화기에 좋다 등)

다. 섭취방법 · 섭취량

제품의 성질상 섭취방법과 섭취량을 표현하여야 할 경우 해당제품의 식품영양학적 기준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섭취방법 및 섭취량.

라. 기타 허위표시 · 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 등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유통기한 자율화

고시 제 98-67호
(‘98.6.15→’98.6.15)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중 과자류(2건), 아이스크림(2건), 유가공품(22건), 식육제품(17건), 어육제품(4건), 면류(6)건 청량음료(3건), 김치절임류(84건), 주류(2건)에 대한 유통기간을 제조자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개정됨.

업계(제조자)가 자신이 생산하는 제품별로 유통기간을 설정하여 포장지에 표시, 운용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업계가 그동안 꾸준히 요구해온 사항이었다. 그동안 유통기한의 업계자율화운용에 대한 정부측우려는 커졌다. 제조업자가 당장의 이익만을 앞세워 이제도를 악용한다면 어떻게 일일이 단속할 것이며 사고가 터진다음에 제조업자를 처벌한들 사후약방문격이 아니겠느냐 하는것이었다.

업계가 유통기간을 현재보다 대폭 늘려운용할시 市場에 유통기간內의 제품들의 변질된 품질의 제품이 유통될 수 있다는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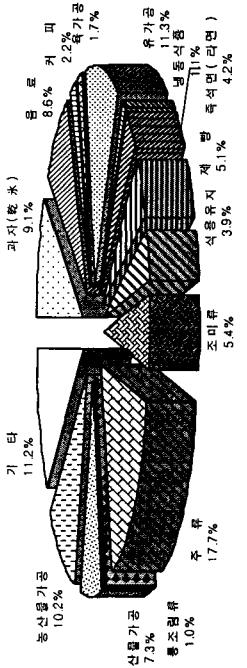
유통기간 업계자율화운용은 업계에게는 훨씬 더큰 책임을 져야하는 문제였다. 업계는 스스로 유통기간을 설정하는 시험과 유통 line의 재점검운용등의 문제가 발등에 떨어졌기 때문이다. 제품의 유통기한은 ① 당해 제품의 배합성분, 제조공정, 포장상태, 유통상태(온도, 환경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업계 자신이 설정 운용하는 각 제품의 유통기간內 모든 문제를 업계가 100% 책임져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맞은 것이었다. 예로 한제품의 유통기간 설정 시험에 많은 시간과 비용(예 : 약 2000 ~ 10000 만원 등)이 필요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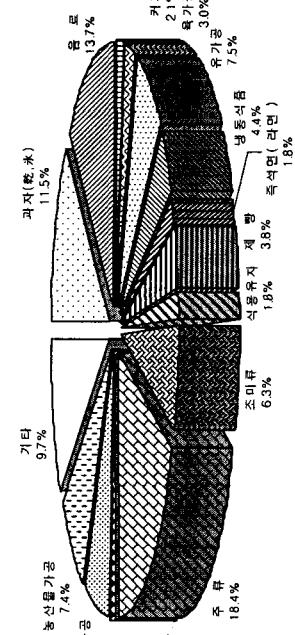
사실은 그간 정부가 제품별로 설정했던 일정한 유통기간은 어떤 면으로는 업계에 어느정도의 면책을 주었던 것이었다고 본다.

韓·日加工食品產業別構成現況

(국66.) 한



(五六六)



單位：億 원，%

분류	현·국			현·국			비고
	96	97	98	99(e)	99(e)	99(e)	
파자(원, 원)	21877	23349	25192	0.3	* 간파 44, 빙파 44, 스파 44, 예술한자		
음·음·료	27743	27692	22777	23650	3.8	* 업·체자·토·가·료·기·준 : 펜카피 포함)	
축기·공	45865	50707	55660	61650	3.4	* 업·체자·토·동·서·식·물·재·료·기·준	
유기·공	50000	5130	4820	4730	-1.9	* 육·가·공·형·기·준·은·업·체자·료·기·준으로·수·정	
행동·식품	25631	27684	28845	31210	8.2	* 업·체자·료·아·울·체·청·재·료·기·준(95년·업·체자·료·기·준으로·수·정)	
증식·면(면)	30000	3040	3039	3030	-0.3	* 업·체자·료·99년·업·체자·료·기·준으로·수·정	
제·제·제	86000	9386	10552	11630	5.9	* 라·판·5·자·기·준	
식·용·유·지	12652	15455	12844	14044	9.0	* 식·동·법·경·99년·업·체자·료·기·준·으로·수·정	
조·미·류	78533	9706	10489	10800	3.0	* 통·체·청·기·료·드·15142~15143·'99년은·수·정'	
주·주·주	11860	13513	13815	14920	8.0	* 통·체·청·기·료·드·15452~15454·'99년·업·체자·료·기·준·으로·수·정	
용·조·류	50178	50329	45447	48828	7.0	* 업·체·청·기·준(99년·생·산·량·으로·수·정)	
수·산·활·가·공	3306	3497	3166	2669	-15.7	* 업·체·청·료·아·울·체·청·수·산·률·물·조·료·화·재·일·률·물·조·료·화	
Non-산·활·가·공	17087	19000	19897	20100	0.5	* 통·체·청·기·료·드·15121·통·조·료·기·준(15498)	
기·기	25946	26131	27396	28000	2.2	* 풍·체·청·서·기·료·(단·종·별·구·제·율·15492~15497·기·류·동·15312~15319·청·일·율·15312·천·련·자·미·율·15451·	
기·기	26530	28986	30052	30800	2.5	* 풍·체·청·서·기·료·(단·종·별·구·제·율·15492~15497·기·류·동·15319·청·일·율·1544·이·스·트·류·15455·	
기·기	2585903	2686835	2646597	2759483	4.1	* 풍·체·청·서·기·료·(단·종·별·구·제·율·15492~15497·기·류·동·15319·청·일·율·1544·이·스·트·류·15455·	

單位：億圓%

분야	현			전		
	'96	'97	'98	'99년(예)	'00년(예)	'01년(예)
과학기술, 水)	29008	28979	28210	28020	0.7	* 주류식 품종 개월 보 (이어스, 헤생, 양생자류포함)
음료	30576	31362	32337	33443	2.8	* 주류식 품종 개월 보
커피	4953	5164	5110	5060	-1.0	* 주류식 품종 개월 보 / (기호음료류중 커피류)
우수공	7500	7680	7415	7350	0.9	* 주류식 품종 개월 보 / (수족기 / 공업)
유가공	18106	17290	17495	18193	1.4	* 주류식 품종 개월 보 / 유제품류에서 이아스크립 제외)
별도식품	10143	10497	10582	10694	1.1	* 주류식 품종 개월 보
즉석 렌터 라인	4060	4170	4200	4336	3.2	* 주류식 품종 개월 보 / 소비면밀 23가지 품종 중 즉석류)
제빵	9241	9205	9271	9375	1.1	* 주류식 품종 개월 보 / 소비면밀 23가지 품종 중 빵류)
식용유자	4340	4367	4466	4450	-0.4	* 주류식 품종 개월 보
조미류	14960	15115	15066	15280	1.5	* 주류식 품종 개월 보
주류	48141	47591	45272	44960	-0.7	* 주류식 품종 개월 보
동조임류	62900	6134	3815	3737	-2.0	* 주류식 품종 개월 보
수산물가공	18900	17885	17476	17326	-0.9	(7) 태양식 품종 개월 보 / 수산연계제품)
간식류가공	17672	17716	17532	18132	1.1	* 주류식 품종 개월 보 / 기타 수산류 가공)
기타	21421	22329	23769	23608	-0.7	* 주류식 품종 개월 보 / 상기 이외 종류)
기타	244411	245503	245950	243664	0.4	* 주류식 품종 개월 보 / 청정 시장